

2019년 12월 2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물복지정책팀 팀장 김동현(044-201-2372), 사무관 김정원(2377) / 제공일 : 12월 24일(총 3매)

한국농림축산식품부

이동식 동물장묘업 등록제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 중 - 조선일보 12.24일 기사에 대한 설명 -

- 이동식 동물 화장·장례 서비스 대해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‘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’(산업부 주관)에서 제시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(실증 장소 미확보) 규제샌드박스 실증규제특례*를 허용하지 않은 것임**('19.7월)
 - *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제한된 구역·기간·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,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특례 신청(「산업융합촉진법」 제10조의3)
 - **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 1차 심의('19.3월), 2차 심의('19.5월)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승인
- 2019년 12월 24일 조선일보 A10면 <규제 풀어줄 듯 말듯...동물화장 트럭·화상투약기 희망고문 1년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언론 보도 내용

- 이동식 동물 화장 서비스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 기업 대표는 “규제를 풀어준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런 희망 고문이 없다”며 한숨을 쉬었음
- '19.7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반려된 뒤 지자체 20여곳을 찾아갔지만 지금까지 사업 파트너를 구하지 못하였음



농림축산식품부 입장

-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 문화 조성, 환경 관련 규범 준수 등을 위해 「동물보호법」에 ‘동물장묘업’ 등록제*가 도입('08) · 운영되어 왔습니다.

*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물에 화장로를 설치한 화장시설 또는 장례식장, 봉안시설을 갖춰 기초 지자체에 등록 (※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음 · 매연 · 분진 및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)

- '19.12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 4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.

- 차량에 화장로 등을 설치하여 이동하면서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(이동식 동물화장 · 장례 서비스)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불법인 상황입니다.

- '19.3월 이동식 동물화장 · 장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임시허가*를 신청하였고

* 신규 융합제품 · 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· 규격 · 요건이 법령에 없거나, 기존 존재하는 기준 · 요건 적용이 곤란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신청 (「산업융합촉진법」 제10조의5)

- 학계, 각계 전문가, 연구소, 중앙 ·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에서는 실증규제특례* 신청을 권고하였습니다.

*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제한된 구역 · 기간 · 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,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특례 신청 (「산업융합촉진법」 제10조의3)

- 이후 2차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에서는 실증규제특례를 위한 실증 장소를 제공할 지자체 참여가 되지 않아 실증규제특례에 대한 부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

○ 이에 따라, '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'에서 요건 미충족(실증 장소 미확보)를 이유로 규제샌드박스 실증규제특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.(7월)

□ 농식품부는 바람직한 장묘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 장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동식 동물 화장·장례 서비스 등록제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각계 전문가, 관계부처,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.